

'93. 9. 27

댐 특委報告資料

建設都市局

목 차

1. 댐 제원표
2.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3. 대청댐 도선 안전관리 대책
4.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추진현황
5.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제한
6. 대청 광역 취수장 이전 검토
7. 댐주변 국토이용계획 추진현황

1. 댐 諸 元 表

댐 規 模	單 位	忠 州 댐	大 清 댐
總 事 業 費	億 圓	5,475	1,445
補 償 費	億 圓	1,421	472
工 事 期 間		'78. 6. ~ '85. 10.	'75. 3. ~ '80. 12.
水 沒 家 口	世 帶	7,105	4,075
댐 높 이	M	97.5	72
댐 길 이	M	464	495
洪 水 位	M	EL 145	EL 80
滿 水 位	M	EL 141	EL 76.5
貯 水 面 積	km ²	97	72.8
湖 水 길 이	km	68	86
貯 水 量	百 萬	2,750	1,490
用 水 供 給	百 萬	3,380	1,649
發 電 容 量	萬 KW	40	9
댐 形 式		콘크리트重力式댐	콘크리트重力式 및 石塊式댐의 復合型

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댐주변 지역 현황

※발전 시설로 부터 5km 이내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

□ 대청댐 : 3개군 8개 읍면

청원(문의), 보은(회남, 회북), 옥천(옥천, 군북, 안남, 동이, 안내)

□ 충주댐 : 4개시군 17개 읍면동

충주 (목벌, 종민, 칠금, 안림, 목행)

증원 (살미, 산척, 동량)

제천 (청풍, 수산, 한수, 덕산)

단양 (단양, 단성, 적성, 가곡, 매포)

□. 지원 현황 ('90 ~ '93)

< 대 청 댐 >

(단위:천원)

사업별 시군별	계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육사 영업	홍사 보업	부사 대업
계	267,835	57,959	151,148	35,915	17,000	5,813
청원군	49,062		49,062	35,915	17,000	5,813
보은군	37,959	37,959				
옥천군	122,086	20,000	102,086			

< 충 주 댐 >

(단위:천원)

사업별 시군별	계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육 사 영 업	홍 사 보 업	부 사 대 업
계	373,649	34,050	241,818	75,781	17,000	5,000
중 원 군	71,724		71,724			
제 천 군	118,617	34,050	84,567			
단 양 군	63,454		63,454			
충 주 시	22,073		22,073			

□ 문 제 점

- 지원사업 재원이 미약 (현행: 전전년도 전기판매 수익금의 5 / 1000)
- 사업내용의 제한

□ 추 진 상 황

- 93.6.17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의견에 대한 회의시 지원사업 재원 확대 건의(건설부)
- 93. 6. 25 대청댐 도선 수리 건조 및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 (한국전력공사)
- 93. 8. 3 대청댐 도선 수리건조 및 유지관리비 지원건의 (한국수자원공사)

□ 대 책

- 93. 7. 22 건설부 공고 제 1993 - 123 호로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입법 예고
- 법 제 34조의 4 (지원사업 재원 확대) 신설
- 대청댐 도선 수리 건조 및 유지관리비 지원 가능 회신 접수

3. 대청댐 도선 안전관리 대책

□ 현 황

- 도 선 : 11 척 (청원 1, 옥천 10)
 - 유도선법 적용으로 건설도시국 치수과 관리
- 유도선 안전관리
 - '93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시달 : 시,군 ('93. 4. 6.)
 - 선박 안전검사 실시 : 1 회
 - . 5 톤 미만으로 시장,군수가 4 월에 실시 (11척)
 - 정기 안전지도 점검 실시 (도 : 6 회 , 시.군 : 20 회)

□ 문 제 점

대청댐내 도선 11척이 '79. 7 월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조하여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선박의 내구 연한이 15년이므로 현재 도선이 낡고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함.

□ 대 책

수자원 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 교체 요망건의 한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음.

< 발전사업 290-534. '93.8.10. 및 한전 발단발(역) 120.01-9989. '93. 8.31 >

4.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

□ 사업규모

○ 규모 : 250 천톤/일

○ 급수구역 : 충주시 증원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5개시군 31개도시)

□ 지방비 분담액

○ 총사업비 850억중 통합정수장 건설에따른 지방비 분담액 300억 추정 (35.3%)

—	통합정수장 건설비 260억
—	용지매수 보상비 40억

□ 수도법개정 및 지방비 분담에 대한 관계관 회의

○ 회의주체 — 내무부 공기업과

· 일시 '93.9.15 (내무부회의실)

· 참석 전국 광역상수도관련 담당과장 12명

○ 회의 주요내용

· 상수도사업에 있어 국가의 기능은 자치단체에 대한 용수공급이므로 수도법을 개정하여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조항 신설계획(E.P.B.내무부.건설부)

·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요지방비 전액을『토특』자금으로 용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추진

○ 문제점

· 광역상수도의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이『토특』자금으로 전액 용자되어도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상환문제 발생

○. 건의내용 ('93.9.18내무부)

-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시설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지원을 요구
- 『토특』자금의 무이자 장기상환
- 기본계획 수립시 송수관로를 수수지역 배수지에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지방비 부담경감
- 광역상수도 요금체계를 전국 단일요금 체계 적용

(※ 정수생산비 전국평균 102 원/톤, 수도권76원/톤, 대청댐186원/톤)

1 통합정수장 건설비가 전액 융자될경우 상환방안 검토(안)

— 소요 지방비가 300억 정도로 15년후의 전체상환액 525억 추정 —

- .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현행톤당 90원)을 현재보다 11원10전 정도인하조정
- . 담배소비세의 20% 정도를 광역상수도사업 상환재원으로 활용
 - ※ 전국의 담배 소비세액 4500억중 815억정도를 광역상수도사업 재원으로 활용계획
- .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인상하여 (현행 10톤당1원 → 3원정도)상환재원으로 활용
 - ※ 충주댐의 '92년도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액이 597백만원임
- . '94년도부터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요금의 조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계획 (내무부)

5.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대청댐)

○ 전체면적	—————	177,291 km ²
┌	충북 권 ('91.11.8.)	101,291 km ²
	청원 군	94,867 km ²
	보은 군	6,424 km ²
	└ 대전 권 ('80.11.24.)	76,000 km ²

□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주민 규제사항

1. 금지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어, 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등

2. 제한행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① 생활기반 시설

- 농가주택 : 연면적 100m² 이하
- 부속건물 : 33 m² 이하
- 지목이 대지의 경우에 한함

② 소득기반시설

- 잠 실 :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 이하
- 버섯재배사 : 200 m² 이하
- 담배건조실 : 100 m² 이하 등

③ 주민공동 시설

- 유치원, 경로당
- 새마을회관
- 농협, 축협이 설치하는 공동구관장 등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문제점

○. 각종행위의 금지 및 제한으로 지역개발 제한

○. 지가하락등 피해의식 상존

○. 이에대한 보상대책이 없음

○. 행위 완화가 될경우 상수원의 수질악화 요인

□ 대책

○. 상수원보호등의 목적으로 관련법이 강화되는 경향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완화는 지난

6. 대청광역취수장 이전검토

□ 시설 현황

- 취수원 : 청원군 문의면 상장리
- 급수도시 : 청주, 천안, 조치원, 온양등 20 개 도시
- 시설용량 : 250 천톤/일 + 83천t/일(청주시)
(광역시설)
- 공사기간 : '84. 12. 29 ~ '87. 12. 31 (36 개월)
- 총사업비 : 828 억원

] 현 위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문의지역 개발제한
※ 문의지역 주민 생계대책 요구로 인한 집단반발 (3 회)
- 댐 저류수의 장기체류 (180 일) 로 수질저하
※ 봄, 가을 부영양화 현상발생

] 이전검토 및 건의 (충청북도)

- 위치 : 본류 상류 12 km 지점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 소요사업비 : 약340 억원
- 도 → 건설부에 건의(1987)

□ 검토결과

- 댐내 저류수의 특성상 호소내 수질이 위치에 따라 큰차이가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취수원의 이전은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판단.
※ 건설부 상수 30340 - 2314 ('88. 2. 10)

7. 댐주변 국토이용계획 추진상황

□ 댐주변 용도지역 현황

(km²)

구분 댐별	용도지역						대상지역
	계	자연환경	경지지역	산림보전	개발촉진	수산자원	
계	527.802	181.852	135.918	192.755	1.005	16.272	5개군 17면
대청댐	198.124	181.852				16.272	청원2면, 보은1면 옥천8읍, 면
충주댐	329.678		135.918	192.755	1.005		충주2동, 중원4면 제천5면, 단양2면

□ 규제사항

○ 대청호

— '90. 7. 19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처 고시(제 90 - 16) —

※ 공업지역, 개발촉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 폐수배출량 1 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금지
- 건축 연면적 800 m² 이상 오수배출시설 신규입지금지
-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의 건축면적 400 m² 이상 신규입지금지
- 축산시설 신규입지금지(BOD 50 PPM 이상)
-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규입지금지
- 내수면 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 충주호

— 현재 수질 II급수를 I급수로 개선코자 '94년까지 기간을 설정

환경처에서 고시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개발을 잠정적으로 제한 —

※ 농·축산 임업과 관련된 소규모 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외의 행위 가능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사항
(타지역 공히 규제)

< 산림보전지역 >

-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 토석 채취하는장소의 면적이 10 만 m² 이상
- 1 만m² 이상의 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사회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병원,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농·축산물 가공공장등)
- 농어촌휴양시설의 총면적이 1만 m² 이상

< 경지지역 >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가공시설의 설치면적이 1만 m² 이상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 1 만m² 이상의 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체육시설, 농어촌휴양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장, 박물관, 비료 및 사료제조시설)

□ 댐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 상황

추진배경

- 주변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해
-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케 됨.

개발사업 추진개요

< 대청댐 주변 >

- 사업내용 : 군북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 위 치 :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 면 적 : 289 천 m²

○ 변경내용

. 경 지 지 역 : 27 천 m²] → 개발촉진지역 : 289 천 m²
 . 산림보전지역 : 262 천 m²]

○ 사업개요

. 시 행 자 : 계광건설 육 동 진
 . 사업기간 : '93 ~ '96
 . 사 업 비 : 195 억원
 . 주요시설 : 가족호텔, 식물원, 매점, 수영장 및 레저시설

○ 추 진 경 위

. '93. 4. 6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육천군 → 도)
 . '93. 5. 20 도 관련부서 협의완료
 . '93. 5. 21 중앙관련부서 협의
 ※ '93. 9. 6 불협의 회신 (환경처)

< 충주호 주변 >

- 사업내용 : 충주호주변 관광개발 사업
- 위 치 : 중원군, 제천군지역 5개 지구
- 면 적 : 137.2 km²
- 용도지역별 내역

. 경 지 지 역 : 41 km²] → 자연환경보전지역 : 135 km²
 . 산림보전지역 : 9 km²] → 관 광 휴 양 지 역 : 2 km²
 . 개발촉진지역 : 1.2 km²] → 취락지역(물태지구) : 0.2 km²

○ 지구별 관광개발계획

- ① 중원군 서운지구 0.360 km²
- ② 제천군 물태지구 0.793 km²
- ③ 제천군 능강지구 0.439 km²
- ④ 제천군 탄지지구 0.295 km²
- ⑤ 제천군 계산지구 0.234 km²

○ 추진경위

- . '85. 12. 7 충주댐주변 국토이용계획 수립지침 시달 (건설부 → 도)
- . '86. 10 ~ '89. 11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 및 보완 : 3회 (도 → 건설부)
- . '92. 5. 18 국토이용계획 제4차 신청 (도 → 건설부 → 관계부처)
- . '93. 4. 19 국토이용계획 축소후 제5차 신청 (도 → 건설부)
- . '93. 6. 15 재검토(불가)회신 (건설부 → 도)

문제점 및 대책 전망

< 대청호주변 개발사업 경우 >

- '93. 5 이후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 '93. 9. 6 환경처에서 동 지역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관광휴양시설이 입지하는것은 불가 회신
- 현재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자원보전지역이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게 되며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 상수원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이중 삼중 지정되어 있어 완벽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개발사업 추진이 지난한바
- 따라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 . 각종 개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 . 댐조성으로 인한 지역이 낙후되고
 - .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된데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어
- 대청호주변 군북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 . 육천군으로 하여금 육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 . 완벽한 오수처리시설이 수립되면 관계부처와 재협의 추진할 계획임.

< 충주호주변 개발사업 경우 >

- '86 이후 5 차에 걸쳐 관계부서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바 있으나 '93. 6.15 건설부의 최종 회신에서 「충주댐은 현재 수질이 II 급수로서 매년 하절기에는 조류가 발생하는등 수질이 저하되고 있을뿐 아니라 동 지역의 수질을 '94 년까지 I 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수질개선 목표 시한인 '94 년 이후에 가서 수질개선 사항을 보아 결정하겠다」는 불가 회신됨.

※ 충주호의 년평균 BOD : ('90) 1.1 PPM, ('91) 1.2 PPM, ('92) 1.4 PPM

- 충주댐주변의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대책은

. 정부가 I 급수 목표로 정하고 있는 '94 년 이전이라도 지역개발의 여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관계기관과 재협의하고

(예) 제천 물태지역 취락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용역비 및 개발사업비등
11 억원 확보

. '94 년 이후에는 당초 추진한 5 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임.

※ 충주호주변 관광개발 사업 현황 (기승인)

┌ 충주 칠금지구(0.171 km²) 충주시 주관 (공정 45 %)
└ 제천 교리지구(0.332 km²)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정 40 %)

- '94 년 1 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10 개 → 5 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 충주호주변의 개발사업은

- 현재의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조정되어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하나
- 충주호의 수질을 '94 년까지 I 급수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는 이상 충주호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은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현행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규제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의
생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 주변지역개발사업비 지원확대, 지역개발세 상향 조정, 오폐수시설 사업비
지원 확대, 기타 주민숙원사항등을 강구해 나가겠음.